한류산업진흥법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5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 박정하・박성민・주진우

진종오 • 한지아 • 김위상

정연욱 • 조은희 • 최은석

이인선 · 김승수 · 박대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, 드라마,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, 유럽,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'유행 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'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.

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('17 ~ '21년) 화장품·음악· 방송 등 한류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,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 유발액 기준 총 37조원에 달했고 이 중 30.5조원은 소비재 수출 증진, 6.5조원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진을 통해 발생하였다고 함.

한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서 지난 5년간('17 ~ '21년) 한류 확산에 따른 총 취업유발인원은 16만명으로, 이 중 11.6만명은 소비재 수출 증가로, 4.4만명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로 유발되었음. 또한, 전체 취업유발인원 16만명은 2022년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(81.6만명, 통계청)의 5분의 1(19.6%)에 해당하는 수치임.

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'한류산업'이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·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(안 제2조제2호).
- 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·장기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(안 제8조).
- 마. 정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둠(안 제9조).
- 바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

- 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- 사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안 제12조).
- 아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,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 13조).
- 자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을 한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5조).
- 차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(안 제17조).

한류산업진흥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한류"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해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.
 - 2. "한류산업"이란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·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.
 - 3. "한류연관산업"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·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.
 - 4. "한류사업자"란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- 제3조(기본이념) 이 법은 한류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전 세계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(이하 "한류산업 등"이라 한다)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 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

- 제6조(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·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·장기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
 - 2.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- 3.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- 4. 한류산업 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소, 대학,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한류진흥위원회의 심의 •의결을 거쳐 확정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한류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

- 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·대상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한류진흥위원회) ① 정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에 관한 사항
 - 2. 한류산업 등의 진흥정책의 총괄·조정
 - 3. 한류산업 등의 진흥정책의 개발ㆍ자문
 - 4. 한류산업 등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

- 5.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기획재정부차관·교육부차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·외교부 차관·농림축산식품부차관·산업통상자원부차관·보건복지부차관 ·해양수산부차관·중소벤처기업부차관·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·식품의약품안전처장·국가유산청장
- 2. 한국콘텐츠진흥원장,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, 한국관광공사장,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, 세종학당재단 이사장, 국가유산진흥원 이사장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,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,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, 한식진흥원 이사장
- 3. 한류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

- 제10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교육 •연수·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.
 - 1.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
 - 2.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분석보고서 등 연구개발 결과
 - 3. 해외 권역별 한류산업 등의 시장동향조사결과
 - 4. 한류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도·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
 - 5. 그밖에 한류산업 등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필요한 데이터
 - ③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2조(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
 - 2.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, 교육,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
 - 3.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
 - 4. 한류사업자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 및 국내 유치
 - 5.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 · 운영
 - 6. 한류사업자와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 - 7.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시설·공간 구축, 운영 및 서비스 제공
 - 8. 그 밖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,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3조(한류산업 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,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

- 위하여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4조(한류산업 등 창업 활성화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공공기관을 한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전담기관의 임·직원이나 그 직(職)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, 지정절차,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전담기관의 지정취소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

-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8조(과태료) ①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